

국토교통부훈령 제1544호

「국토교통부 청년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을 다음과 같이
제정·발령합니다.

2022년 7월 28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제정이유

국토교통부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,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청년 자문단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국토교통부에 청년자문단을 설치하도록 함(안 제2조)
- 나.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문단 활동 계획을 스스로 정하도록 함(안 제3조)
- 다. 청년자문단이 전체 청년들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성(性), 연령,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선발하도록 함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국토교통부 청년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국토교통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,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청년자문단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) 국토교통부에 청년들로 구성되는 국토교통부 청년자문단(이하 “자문단”이라 한다)을 둔다.

제3조(역할) 자문단은 국토교통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

1.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
2. 청년문제의 발굴,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
3. 시행 중인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
4. 국토교통 정책의 평가
5. 국토교통 정책의 체험 및 홍보
6. 그 밖에 자문단이 제안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활동

제4조(구성) ① 자문단은 단장을 포함한 50명 내외의 청년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고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국토교통 분야 정책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
 2. 중앙부처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에서 청년정책 관련 자문단, 서포터즈, 위원회 등 유사 참여 경력이 있는 사람
 3. 대학 동아리, 민간단체 등 청년 참여단체에서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
 4. 참여예산제 공모 선정, 국민디자인단 정책제안 선정 경력 등의 방식으로 정부·지자체·공공기관의 정책 및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사람
 5. 기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문단 참여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람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성(性), 연령,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원을 선발하여야 한다.

제5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원의 보궐로 인해 위원을 추가 위촉하는 경우,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제6조(해촉)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
2. 자문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
3. 자문활동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
4. 위원이 심신장애·장기여행,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2개월 이상 자문단 활동이 어렵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경우
5.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

인정된 경우

제7조(운영) ① 자문단은 분야별 자문활동을 위해 분과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자문단의 역할과 관련하여 자문단 전체 또는 분과별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③ 자문단 단장과 분과 위원장은 각각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. 다만, 담당 공무원이 공석인 경우에는 위원 중 호선한다.

④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단에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국토교통부 청년정책담당관으로 한다.

제8조(자료제출 및 협조) 자문단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자문단 활동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9조(현지출장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문단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정책현장 확인 등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단으로 하여금 현지 출장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출장을 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문대상 업무 담당부서에서 출장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

제10조(수당 등) ① 자문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, 여비,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② 자문단이 특정 과제의 조사, 연구 및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포상) 국토교통부장관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위원과 자문단 활동에

기여한 관계 공무원, 개인,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제12조(자문결과의 반영)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문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3조(업무의 위탁) ① 자문단의 모집, 구성, 활동 등 지원 업무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위탁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야 한다.

제14조(비밀누설금지 등) 자문단은 활동 과정, 그 밖의 직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5조(재검토기한)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